

# 국회 통과한 축산법 주요 내용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현	행	개	정	후
<p>제13조의 2(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 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제13조의 2(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기준과 허가 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p>	<p>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축산농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기준 및 허가기준과 허가상한선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후
<p>5. 제13조 제6항 및 제1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2. ~ 5. (생략)</p> <p>⑥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초과사육부과금의 징수대상이 된 종축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p> <p>⑦ (생략)</p> <p>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당해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p>제73조(벌칙) 제13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2. 제13조의 제1항 또는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축업·부화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한 자</p> <p>3. ~ 6. (생략)</p>	<p>5. .....제8항의.....</p> <p>2. ~ 5.(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p>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3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p> <p>2.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한 자</p> <p>3. 제1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선을 초과하여 축산업을 영위한 자</p> <p>제74조(벌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2 조(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당시 제13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허가상한선을 초과한 축산업자는 이번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이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자로서 제1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기업 축산업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하여 축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상한선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국회 통과한 축산법 주요내용

현행	개정후
<p>신고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축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축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수산부 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자의 시설, 기타 사업의 규모를 제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다.</p> <p>⑥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3. (생략) (신설)</p> <p>제14조(감축명령, 초과사육부과금, 등록·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종축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육가축의 감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최고한도, 초과두수의 감축방법을 정하여 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감축하게 할 수 있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때</p> <p>2.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p> <p>3. 제13조 제3항 및 제1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p> <p>4. 제13조 제5항 및 제1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제5항의</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심의위원회는 농림수산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감축명령, 초과사육부과금, 등록·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1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및 허가기준과 허가상한선..... 제5항의.....</p> <p>3. .... 제6항의.....</p> <p>4. .... 제6항의.....</p>